

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3. 11. 15(토)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년 10월 24일 이천시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3년 10월 28일
- 다. 상 정 일 자 : 제65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
제3차(2003. 11. 14) 자치행정위원회 상정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종화)

가. 제안이유

-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내용 보완 및 단서조항 삭제함
-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
-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

나. 주요골자

- 1) 단서조항 삭제(제2조제2항 및 제4조제1항)
- 2)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(제7조)
 - 가) 당초 : 유료노인복지시설
 - 나) 변경 : 노인복지시설

3) 문화재에 대한 감면(제10조2항)

가) 당초 :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%를 경감한다

나) 변경 :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, 종합토지세
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

4) 인용법령의 추가에 따라

가) 당초 :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

나) 변경 :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관리법 제16조제1호

5) 인용법령의 변경됨에 따라 조문정리(안 17조)

가) 당초 :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

나) 변경 :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

6)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소유
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

7)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
은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이해수)

- 본 개정 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
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, 또한, 인용법령의 개정과 불합리한 조문정리를
위한 행자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
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7. 기타사항 : 없 음